

Tops퇴직플랜 정기예금 특약

제1조 약관의 적용

Tops퇴직플랜정기예금(이하 '이 예금'이라 함)의 거래는 이 특약 외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은 정기예금으로 합니다.

제3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특정금전신탁의 수탁자로 합니다.

제4조 계약기간

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개월에서 60개월(5년) 이내에서 연, 월, 일로 합니다.(2020.12.27 개정)

제5조 최저가입금액

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원 이상으로 합니다.

제6조 재예치

- ① 이 예금은 예금주가 신청한 경우 만기일에 자동으로 재예치되며, 약정이자율을 제외한 계약조건은 직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재예치됩니다.
- ② 자동으로 재예치되는 원금은 직전 계약기간의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.
- ③ 은행은 고객에게 재예치됨을 설명하고 고객이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고객이 신청한 방법(SMS또는 E-mail)으로 통지합니다. (2012.9.21 개정)

제7조 이자

- ① 이 예금은 예금일 및 매 재예치일을 이자율결정일로 합니다. 단, 재예치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을 재예치일로 합니다. (2014.9.16 개정)
- ② 이 예금의 이자율은 매 이자율결정일에 영업점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이자율에 따라 변경 적용합니다.
- ③ 이 예금의 이자는 만기일에 셈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.

제8조 중도해지이자율

- ① 예금주가 만기일(재예치일)전에 지급 청구할 때는 신규일(재예치일)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신규일(재예치일)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중도해지이자율에 의해 지급합니다
-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만기일전 예금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예금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일 또는 재예치일에 영업점에 고시된 이 예금의 특별중도해지이자율로 셈하여 지급합니다.

1. 가입자의 퇴직, 연금형태의 지급 사유

2.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

- 1)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
- 2)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
- 3) 가입자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
『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- 4) 가입자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
『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
- 5) 그 밖에 천재·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

3. 퇴직연금의 계약해지 사유

- 1)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,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
- 2)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
- 3)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
- 4) 수탁자의 사임
- 5) 가입자의 사망 (2013.2.22 개정)

4. 퇴직연금계약에 의한 일정률의 수수료지급 사유

- 1)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
- 2)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에 의한 자산관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

5. 신한은행을 수탁자로 하는 퇴직연금 자산관리 계약이전 사유

- 특별 중도해지이자율
- 계약기간 12개월 이하: 신규 또는 재예치일 당시 고시된 계약기간별 약정이자율
- 계약기간 24개월 이하: 신규 또는 재예치일 당시 고시된 12개월제 약정이자율

- 계약기간 36개월 이하:

신규 및 재예치 이후 24개월 미만 경과 시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고시된 이 예금의 12개월제 약정이자율,

신규 및 재예치 이후 24개월 이상 경과 시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고시된 이 예금의 24개월제 약정이자율

- 계약기간 60개월 이하:

신규 및 재예치 이후 24개월 미만 경과 시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고시된 이 예금의 12개월제 약정이자율,

신규 및 재예치 이후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경과 시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고시된 이 예금의 24개월제 약정이자율,

신규 및 재예치 이후 36개월 이상 경과 시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고시된 이 예금의 36개월제 약정이자율

※단, 4호의 『퇴직연금계약에 의한 일정률의 수수료지급 사유』에 의한 중도해지하는 경우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약정이자율로 셈하여 지급합니다

※일단위 정기예금도 계약기간 및 경과기간이 월 단위로 적용됩니다.

제9조 일부해지

① 이 예금은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일부해지가 가능합니다. 다만,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별로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일부해지가 가능합니다.

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위한 예금 지급의 경우는 전 항의 일부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.

1.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
2.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

③ 만기일전에 일부해지하는 경우 일부해지금액에 대한 이자는 제8조에 따라 지급합니다.

제10조 거래제한

이 예금은 담보제공, 질권설정, 양도, 통장발급이 불가하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할 수 없습니다.

제11조 예금자보호

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(DB)에서 운용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.

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(DC) 및 개인형 퇴직연금(IRP)에서 운용되는 경우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.

부칙

1. 이 특약은 2012.3.23부터 시행합니다.
2. 이 특약은 2012.9.18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3. 이 특약은 2012.9.21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4. 이 특약은 2013.2.22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5. 이 특약은 2013.11.1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6. 이 특약은 2014.9.16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7. 이 특약은 2015.1.1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8. 이 특약은 2015.2.9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9. 이 특약은 2015.6.8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10. 이 특약은 2020.12.27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
